

제목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킨
평택대 이사 규탄 성명서

총 4 면

발신: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재원(010-8853-8334)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보도로 우리나라 교육정상화에 기여해 오며 불철주야 정론직필을 해 오신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키고 대학 공공성을 훼손한 평택대 이사들을 즉각 승인 취소하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킨 평택대 이사 규탄 성명서

학교법인 피어선(평택대)의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법인 측 위원들에 의한 회의 파행과 규정 위반 제안으로 인해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최종 결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그동안 평택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 왔던 공공성 강화 평택대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교육부에 회의 파행을 주도한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와 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제도는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학 공공성의 핵심 장치이다. 그러나 2026년 8월부터 진행된 평택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개추위)에서 법인 측 추천 위원인 김병환, 김우영 이사는 합리적인 의결 방식을 논의하던 도중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무단 이탈하여 회의를 파행시켰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도 법인 측 위원들은 규정상 절차를 거친 6인의 후보군을 무시한 채, '현 개방이사 3인 유임' 제안을 고수하며 최종 합의를 무산시켰다.

특히 이번 파행을 주도한 김우영 이사는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출신으로, 정상화 이후 정이사로 취임한 인물이다. 관할청 파견 경력의 이사는 공정하고 법치적인 이사회 운영을 이끌 도덕적·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무단 이탈과 절차 무시로 개추위 결렬을 초래하여 그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법인 측 개추위 위원들이 무리하게 재추천을 시도한 현 이계안 이사장은 개인회사 상근이사 직을 유지하면서도,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스스로 결재를 거쳐 14개월 동안 상근이사 급여를 수령해 온 부적절한 급여 수령 논란의 당사자이다. 규정된 절차마저 무시한 채 이계안 이사장을 개방이사로 재선임하려 한 시도는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추진연대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라, 정당한 임원 선임 직무를 방해하고 학내 혼란을 야기한 김병환, 김우영 이사에 대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취임 승인 취소를 촉구하였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킨 평택대 이사 규탄 성명서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키고 대학 공공성을 훼손한 평택대 이사들을 즉각 승인 취소하라!”

사립학교법이 개방이사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는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대학 평의회(이하 대평위)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개추위)는 사립대학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핵심 자치 기구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법인 피어선(평택대학교)의 개방이사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법인 측 위원들의 파행적 태도로 개방이사 후보 추천이 최종 결렬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개추위는 법정 기한 내 정상적인 2배수 후보 추천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법인 측 추천 위원인 김병환, 김우영 이사는 2026년 9월 3일 제2차 회의 당시, 합리적인 의결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이탈·퇴장하여 회의를 파행시켰다. 대평위 측 위원들의 배려로 9월 8일 제3차 회의가 재개되었으나, 법인 측 위원들은 규정과 정해진 서류 제출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후보군에도 없던 인사를 포함한 '현 개방이사 3인 유임'이라는 위법성 제안만을 고수하며 최종 합의를 무산시켰다.

특히 추진연대는 과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출신으로, 정상화 이후 일반 이사로 취임하여 4년째 직무를 수행 중인 김우영 이사(동덕여대 교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관할청 파견 임시이사 경력의 이사는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법치적 이사회 운영을 이끌어야 할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무단 이탈을 감행하고 법정 후보 추천 절차를 무산시키는 데 앞장선 것은 임시이사 출신으로서의 책무와 중립성을 심각하게 저버린 처사이다.

더욱이 파행 과정에서 현 이계안 이사장을 다시 개방이사 후보로 밀어붙인 시도는 평택대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현 이계안 이사장은 개인회사의 상근이사 직을 유지하면서도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조차 없이 스스로 결재를 거쳐 14개월 동안 법원 상근이사 급여를 수령해 온 당사자이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채 부적절한 급여 수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규정된 후보 접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방이사로 재추천하려 한 법인 측의 제안은 개방이사 제도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르면, 관할청은 임원이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키고 후보 추천 절차를 무산시킨 행위는 대학 법인의 정당한 임원 선임 직무를 방해하고 학내 혼란을 야기한 명백한 책임 사유이다.

이에 본 추진연대는 지속적으로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온 평택대의 공공성 확

립과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파행시킨 김병환, 김우영 이사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즉각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라!
2. 교육부는 임시이사 출신으로서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법정 추천 절차를 무시시킨 김우영 이사의 파행적 행태 엄중 감사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라!
3. 교육부는 정관과 이사회 결의 없는 급여 수령 논란 및 개방이사 파행 추천의 당사자인 이계안 이사장에 대해 즉각 특별감사 실시하고 승인 취소하라!
4. 평택대 이사회는 개방이사 추천 파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립학교법이 보장한 대학평의원의회의 자치 권한과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원칙대로 이행하라!

2026년 9월 10일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

선재원 민교협 교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평택대 교수)

공성경 K·ESG 평가원 평택지부장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박철웅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목원대 교수)

하태원 평택대 민주총동문회장(1992-1993 총학생회장)